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121
----------	------

2019년 12월 2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9년 10월 16일 김혜련 의원외 9명
2.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22일
3. 상정일자 : 제290회 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【2019년 12월 17일 상정·의결(원안 가결)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 (이병도 의원)

1. 제안이유

-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평생 아이 1명도 안낳는 OECD내 유일한 초저출산국가로 고령화시대와 함께 인구절벽 사태가 예상된 가운데, 특히 서울시는 0.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상황임.
- 이에 신생아 및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여 출산 가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기

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“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”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출산축하용품의 명칭을 출생축하용품으로 변경함 (안 제2조제5호)
- 지원 대상아이를 출생예정 아동을 포함하여 규정함 (안 제2조제6호)
- “보호자”에 출산 예정인 산모를 포함하여 규정함 (안 제2조제7호)
- 지원금액을 ‘15만원 이내’로 확대하여 규정함 (안 제4조2제2항)
- 지원기간을 ‘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’로 하여 규정함 (안 제4조2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조례안의 개요

- 동 개정안은 출산축하용품 지원 확대와 보완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담보하여 저출산 대응 정책 강화 및 ‘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’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 개요(2019)

- 추진근거 : 「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」 제10조, 「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2
- 사업기간 : '18년 7월이후 매년
- 지원대상 :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
- 지원내용 : 출산용품 지원(1인당 10만원 상당)
- 지급방식 : 물품
- 계약기간 : '19년 3월 ~ '20년 3월말까지
 - 물품지급기간은 '19.3월 ~ '20.2월 출생신고분
- 대상인원 : 60,600명 예상 ('18. 1~6월 출생아수 : 30,300명)
- (총)사업비 : 6,363백만원(시비 100%)
 - 축하용품용품 구성 : 60,600명×100천원=6,060,000천원
 - 용품 세트 포장·배송 : 60,600명×5천원=303,000천원

2 주요사항 검토

- ‘출산축하용품’을 ‘출생축하용품’으로 용어변경(안 제2조제5호 등)
 - 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2조제5호에서 ‘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’이라고 정의하고 그 용어는 “출산축하용품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 통일하여, 용어와 정

의 간의 불일치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됨.

□ 출생축하용품 지원내용 및 시기 확대 (안 제4조의2제5호 등)

- 개정조례안(안 제4조의2 제2항)은 현행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을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는 것을 1명당 15만원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취지에 부합한다 할 것임.
- 또한 국회입법조사처(2017)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대응 자체사업 소요예산 비율과 합계출산율은 양(+)¹⁾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¹⁾, 이는 출생축하용품 지원 확대를 포함한 서울시 저출산 대응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 하겠음.
- 개정조례안(안 제4조의2 제2항)은 현재 조례를 근거로 출생 후 3개월 이내 서울시에 출생이 등록된 아이를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출산 축하용품을 지원하는 것을,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 후 3개월 이내의 아이로 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임.
- 이는 유축기 등 수유에 필요한 용품이나 신생아 용품이 대부분 출산 직후 바로 필요한 출산준비물로, 현행처럼 출생 신고 시 신청하고 배송기간까지 고려하면 출산축하용품의 활용도나 시의성이

1) 박선권(2017.8), “지방자치단체별 저출산 지표 및 시사점”. 『지표로보는 이슈』, 제97호, 국회입법조사처.

떨어진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.

- 다만, 허위 임신진단서 등을 통한 아파트 불법 청약이 적발된 사례를 고려해볼 때, 출생전 아동 대상 지급시 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절차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〈 출산축하용품 구성 〉

구 분	세트 1 (아기수유세트, 7종)	세트 2 (아기건강세트, 6종)	세트 3 (아기외출세트, 5종)
구성 품목	유축기 수유패드 모유저장팩 수유시트 젖병솔 세트(병, 꼭지) 젖병세제 유아용 실리콘 칫솔 3종세트	비접촉식체온계 콧물흡입기 온습도계 탕온도계 신생아 손톱가위 유아면봉(300PCS)	아기띠 다용도기저귀매트 밤부 가제손수건(4PCS) 플라워 치아 발육기 에코백
사진			

출처 : 2019년 서울특별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계획(가족담당관-367, 20419.1.7.)

주: 해당 구성은 (주) 휴비딕과 계약한 내용임(기간 : '18.6.4. ~ '19.3.31.)

□ 지원 개시일 관련 부칙 규정

-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15만원으로 확대된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

을(부칙 안 제2조) 2020년 4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2020년 4월 1일 현재 출생예정일 50일 전인 아이로 정하고 있음.

- 이는 최초 사업이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물품 계약 업체와 2020년 3월말까지 1인당 10만원 기준으로 계약을 맺은 관계로, 현재의 계약이 만료된 이후 개정사안을 반영하여 추진하려는 것임.

3 종합 의견

-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채 1명이 안되는 0.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인 초저출산 상태로, 특히 서울시 합계출산율(0.76명, '18년도)은 전국에서 가장 낮고, 출생아수 역시 역대 최저로 2010년 이후 초저출산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임.
-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0년간 100조 원 이르는 예산을 집행했으며, 서울시의 경우에도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매년 보육예산을 1조 8천억 원 편성·집행하는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.
- 본 개정안은 지역사회공동체가 아이의 출생을 함께 축하하며 저출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명을 변경하고, 지원금액과 시기를 확대하는 것인 바,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.
- 다만 출산전 아이의 경우, 부정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사업계획 및 시행방법의 마련이 필요함.

〈참고자료 1〉

자치구 출산축하용품 지원 현황

연번	자치구	지원사업명	지원사업주요내용	지원시작시기
1	광진구	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	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(85부터)	'18.5월부터
2	동대문구	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	28,000원상당 물품: 기저귀, 물티슈	첫째아: '16.1월부터 모든출생아: '19.1월부터
3	도봉구	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	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	'17.11월부터
4	은평구	다자녀 출산용품교환권	셋째아 이상 출산가정, 15만원상당 상품권	'10.1월부터
5	서대문구	다자녀가족 입학축하상품권 지급	다자녀 입학축하 상품권(셋째아부터)	'10.6월부터
		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	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	'17.11월부터
6	양천구	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	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	'17.9월부터
7	영등포구	복스타트 사업	관내 18개월이하 영유아 및 양육자 대상으로 책꾸러미 (그림책2권, 가이드북,추천도서목록 등)을 제공	'19.1월 부터
8	동작구	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	셋째아 이후 구와 계약한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(1인당 2만원 이내, 5년간 지원)	'11.1월부터
9	관악구	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	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과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	'17.9월부터
10	서초구	출산축하용품 지원사업	1. 첫째 : 물티슈(관내 기업 업무협약) 2 셋째이상 : 육아용품꾸러미(관내 기업 업무협약) 3. 모든출산가정 : 육아의류용품세트 2종 택1(구비)	1. '11년부터 2. '11년부터 3. '18년부터
11	송파구	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	민간기업라이온코리아와 협약하여 관내 거주하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가정에 손제정제세트 지원	'17.8월부터
12	강동구	출산축하용품 지원 사업	출생신고하는 모든 가정에 지급 1. 핸드숍세트 (민간기업 라이온코리아와 협약) 2. 영유아기저귀 (구비 사업)	'17년부터

자료출처: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(2019)

〈참고자료 2〉

자치구 출산장려(축하)금 지원 현황

구분	자치구	출산축하금 현황						
		첫째	둘째	셋째	넷째	다섯째	2019년 예산액	조건
1	종로구	300	1,000	1,500	1,500	1,500	481,000	부 또는 모가 10개월 거주
2	중구	200	1,000	2,000	3,000	5,000	350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3	용산구	100	200	500	1,000	1,000	230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4	성동구	-	200	1,000	1,500	1,500	262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5	광진구	100	300	500	1,000	5,000	519,000	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
6	동대문구	100	600	1,000	2,000	3,000	758,600	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
7	중랑구	100	500	1,000	2,000	2,000	790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8	성북구	100	300	500	1,000	1,000	477,000	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
9	강북구	-	300	600	1,000	1,500	285,000	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
10	도봉구	100	300	500	1,000	1,000	370,000	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
11	노원구	-	200	500	1,000	1,000	410,000	부 또는 모가 3개월 거주
12	은평구	100	350	700	1,000	2,000	689,050	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
13	서대문구	100	200	500	500	500	345,000	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
14	마포구	100	500	1,000	3,000	5,000	845,600	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
15	양천구	-	500	700	1,000	2,000	812,000	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
16	강서구	100	500	1,000	1,500	2,000	1,334,000	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
17	구로구	-	300	600	2,000	2,000	476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18	금천구	-	500	700	1,000	1,000	390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19	영등포구	100	500	3,000	5,000	5,000	1,116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20	동작구	300	500	1,000	2,000	2,000	1,216,000	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
21	관악구	100	200	300	500	1,000	335,000	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거주
22	서초구	-	500	1,000	1,000	1,000	680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23	강남구	300	1,000	3,000	5,000	5,000	1,730,0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24	송파구	-	300	500	1,000	1,000	750,000	부 또는 모가 6개월 거주
25	강동구	100	200	500	1,000	1,000	566,400	부 또는 모가 1년 거주

자료출처: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내부자료(2019)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혜련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2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10월 16일
발 의 자 : 김혜련, 송명화, 김태호,
한기영, 임종국, 오한아,
김종무, 박순규, 김정태,
이영실 의원 (10명)

1. 제안이유

- 2018년 기준 우리나라는 평생 아이 1명도 안낳는 OECD내 유일한 초저출산국가로 고령화시대와 함께 인구절벽 사태가 예상된 가운데, 특히 서울시는 0.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심각한 상황임.
- 이에 신생아 및 산모에게 필요한 용품을 제공하여 출산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시기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“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”을 조성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출산축하용품의 명칭을 출생축하용품으로 변경함 (안 제2조제5호)
- 지원 대상아이를 전 아동을 포함하여 규정함 (안 제2조제6호)

- “보호자”에 출산 예정인 산모를 포함하여 규정함 (안 제2조제7호)
- 지원금액을 ‘15만원 이내’로 확대하여 규정함 (안 제4조2제2항)
- 지원기간을 ‘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 3개월 이내’로 하여 규정함 (안 제4조2제4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 중 “아이”을 “아이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예정일이 기입된 출생축하용품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아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7호 중 “보호·양육하고 있는”을 “보호·양육하거나 출산예정인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의 제목 “출산축하용품 지원”을 “출생축하용품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출산을”을 “아이의 출생을”로, 같은 항 및 제2항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각각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, 같은 항 중 “10만원”을 “15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각각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출생일부터”를 “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생일 이후”로 하며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,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각각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“출생축하용품”로 하며, 같은 항 후단,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각각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“출생축하용품”로, “출산축하용품의”를 “출생축하용품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 중 “출산축하용품”을 “출생축하용품”으로 한다.

1.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(다만, 출산 전 신청자에 한해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(의료기관 발급) 또는 표준 모자보건 수첩 (의료기관, 보건기관 발급)으로 출생등록 사항의 확인을 갈음한다.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출생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2020년 4월 1일 현재 출생예정일 50일 전인 대상 아이와 관련된 지원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5. "<u>출산축하용품</u>"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물품을 말한다.</p> <p>6. "대상 아이"란 서울특별시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 의해 주민등록표에 '출생' 등의 사유로 신규 등록된 <u>아이</u>를 말한다.</p> <p>7. "보호자"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, 그 밖의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<u>보호·양육하고</u> 있는 사람을 말한다.</p> <p>8. (생 략)</p> <p>제4조의2(<u>출산축하용품 지원</u>) ① 시장은 <u>출산</u>을 축하하기 위하여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예산범위에서 <u>출산축하용품</u>을 지원할 수 있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"<u>출생축하용품</u>"----- -----.</p> <p>6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이</u> 및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예정일이 기입된 <u>출생축하용품</u> 신청서를 제출한 모 또는 부의 <u>아이</u>를 -----.</p> <p>7. ----- ----- ----- <u>보호·양육하거나 출산</u> 예정인 -----.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의2(<u>출생축하용품 지원</u>) ① -- -- <u>아이의 출생</u>----- ----- 출 <u>생축하용품</u>-----.</p>

② 출산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한다.

③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.

④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. 단, 시장은 신청기한이 경과한 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도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
2. 3. (생략)

⑤ 시장은 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하기 전에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, 지원 내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, 별지 제3호 서식의 출

②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 15만원 -----.

③ 출생축하용품 -----

-----.

④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 출생예정일 전 50일부터
출생일 이후 -----
----- 출생축
하용품 -----.

----- 출생축하
용품-----.

1. 출생축하용품 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출생축하용품-----

-----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 출

산축하용품 지원 대장 및 별지 제 4호 서식의 출산축하용품 출납대장에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.

1.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

2. 3. (생략)

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한다. 지급방법은 제4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상 수령방식에 따른다.

⑦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즉시 환수하고, 이를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출산축하용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물품으로 환수

생축하용품 -----
----- 출생축하용품 ----
-----.

1. 대상 아이의 출생등록 사항(다만, 출산 전 신청자에 한해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(의료기관 발급) 또는 표준 모자보건 수첩 (의료기관, 보건기관 발급)으로 출생등록 사항의 확인을 같음한다.)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출생축하용품 -----.

-----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.

⑦ -----
----- 출생축하용품 -----

-----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.

1. 출생축하용품-----

2. 출산축하용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축하용품의 구입가액으로 환수

⑧ 시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실적을 매 분기별로 확인하여야 한다.

2. 출생축하용품을 -----
----- 출생축하용품의 -----

⑧ ----- 출생축하용품 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4조의2(출생축하용품 지원)2항에서 ‘출생축하용품 지원금액은 대상 아이 1명당 15만원 이내로 한다’ 고 함에 따라 기존 지원금액인 10만원에서 추가되는 지원금액(대상 아이 1명당 5만원)에 해당하는 비용 발생
 - 같은 조례안 제2조(정의), 제4조의2(출생축하용품 지원)에서 ‘출산’ 을 ‘출생’ 으로 개정하는 것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별도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
 - 같은 조례안 제2조(정의) 제7호와 제4조의2(출생축하용품 지원)제4항 및 같은조 제5항 제1호의 개정은 신청절차상 변경이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

2. 비용추계의 전제

가. 대상

-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
나. 전제

- 서울시 주민등록 통계상 2018년 기준 서울시 출생아는 58,074명임
-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은 대상 아이 1명 당 5만원임

다. 추계기간 : 5년

라. 방법

- 서울시 출생아가 매해 4% 감소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2020년 54,101명, 2021년 51,938 명, 2022년 49,860명, 2023년 47,865명, 2024년 45,951명으로 지원 대상 인원 산출
 - ※ 서울열린데이터광장-서울통계간행물-주민등록 통계-출생아 수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평균 출생아 감소율은 연간 8.4%임(실제 주민등록 기준)
 - ※ 서울열린데이터광장-서울통계간행물-장래인구추계-출생아 수 추계(2015년 기준)에 따르면 향후

4년간 평균 출생아 감소율은 연간 0.5%임

3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총 비용(합계) ≙ 12,485,750천원(연평균 2,497,15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연도 구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4년)	합 계
		세입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 (안 제5조)	2,705,050	2,596,900	2,493,000	2,393,250	2,297,550	12,485,750
	소계(b)	2,705,050	2,596,900	2,493,000	2,393,250	2,297,550	12,485,750
□총 비용(b-a)		2,705,050	2,596,900	2,493,000	2,393,250	2,297,550	12,485,750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 무 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2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비용요소

-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
2. 세부추계내역

-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 ≙ 12,485,750천원
 - 2020년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 - = 지원대상자(출생아) × 지원단가
 - = 54,101명 × 50,000원
 - = 2,705,050천원
 - 2021년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 - = 지원대상자(출생아) × 지원단가
 - = 51,938명 × 50,000원
 - = 2,596,900천원
 - 2022년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 - = 지원대상자(출생아) × 지원단가
 - = 49,860명 × 50,000원
 - = 2,493,000천원
 - 2023년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 - = 지원대상자(출생아) × 지원단가
 - = 47,865명 × 50,000원
 - = 2,393,250천원
 - 2024년 출생축하용품 추가지원 비용
 - = 지원대상자(출생아) × 지원단가
 - = 45,951명 × 50,000원
 - = 2,297,550천원